

울 산 선 바 위 공 공 주 택 지 구

전 략 환 경 영 향 평 가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2021. 07.



국토교통부

제1장 계획의 개요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계획지구는 남측으로 국도 24호선, 울산고속도로, 동해고속도로와 인접하여 접근성이 우수하며, 인근 지역에 울산과학기술원, 울산대학교 등 교육시설이 입지하고, 울산 미포·온산 국가산단 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입지하여 대학생, 사회초년생, 산단종사자 등 풍부한 배후수요를 갖춘 지역임.
- 또한 울산다운2·울산태화강변 공공주택지구, 울산과학기술원 등 기존 시가지 및 신규 개발지와 인접하고 있어 해당권역에 공공주택 공급으로 사회 활동이 왕성한 계층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불안 해소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의 「공공주택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021.02.04.)의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에 따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자 함.

1.2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추진근거

- 본 계획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지정면적:1,834,000㎡)으로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별표 2]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함.

〈표 1.2 -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요청시기

구 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가. 도시의 개발	10)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공공주택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자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별표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요청 시기
 주)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2] 2.개발기본계획 가.도시의 개발사업 제3호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에 해당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22조 제4항에 의거, 지구계획을 승인하여 고시할 때에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사항으로, 향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2] 비교3에 따라 지구계획 수립시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의 해체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제외됨

나.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작성 근거 및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작성은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평가 항목 범위 등의 결정)에 의거하였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 방법 등) 및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0-289호)에 따라 작성함.
- 또한,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을 포함하여 결정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다.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본 울산선바위 공공주택지구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별표3]의 “1.도시의 개발사업”중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 면적이 30만㎡ 이상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함

〈표 1.2 -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협의요청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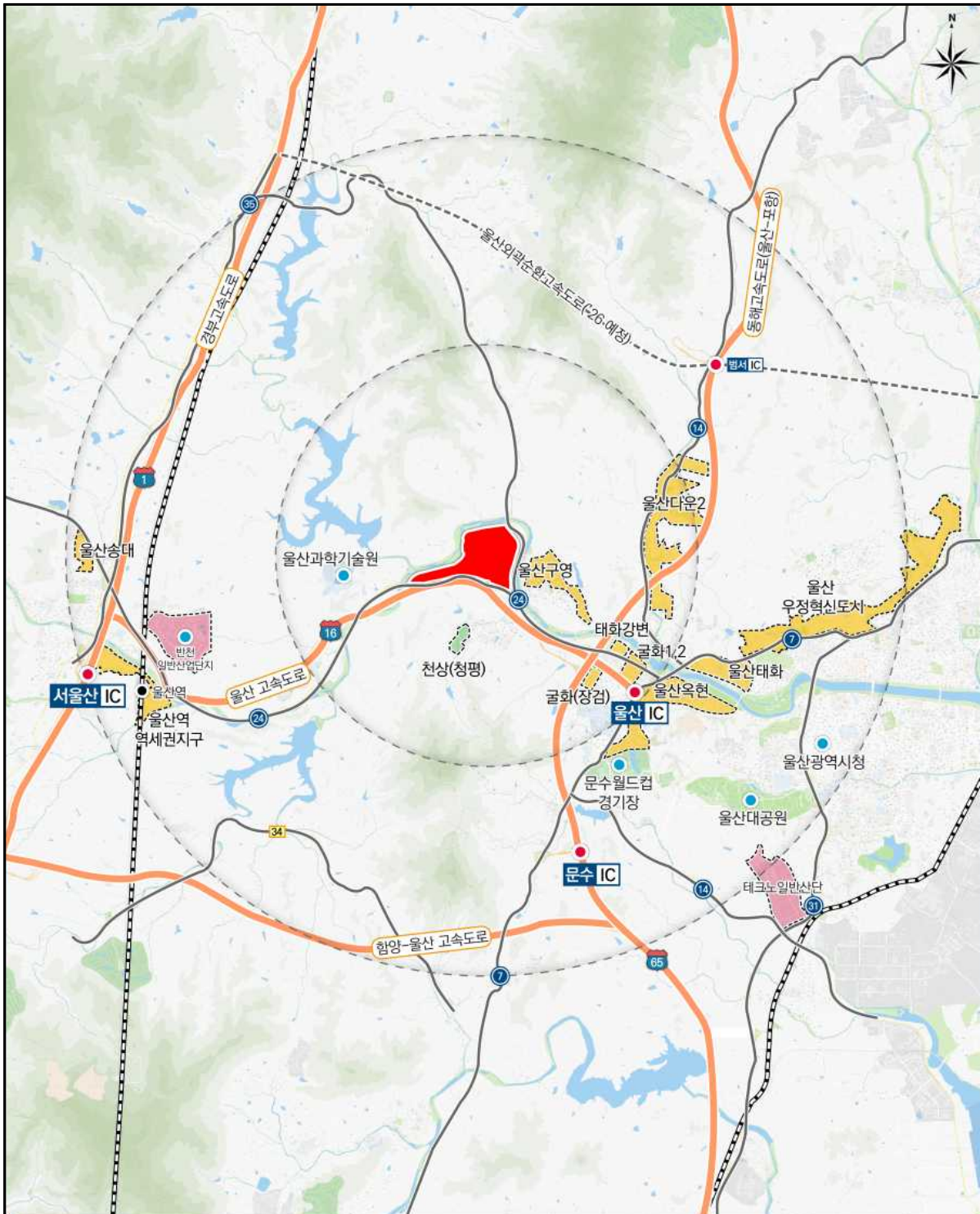
구 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가. 도시의 개발사업	10)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중 사업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공공주택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 승인 등 전

1.3 계획의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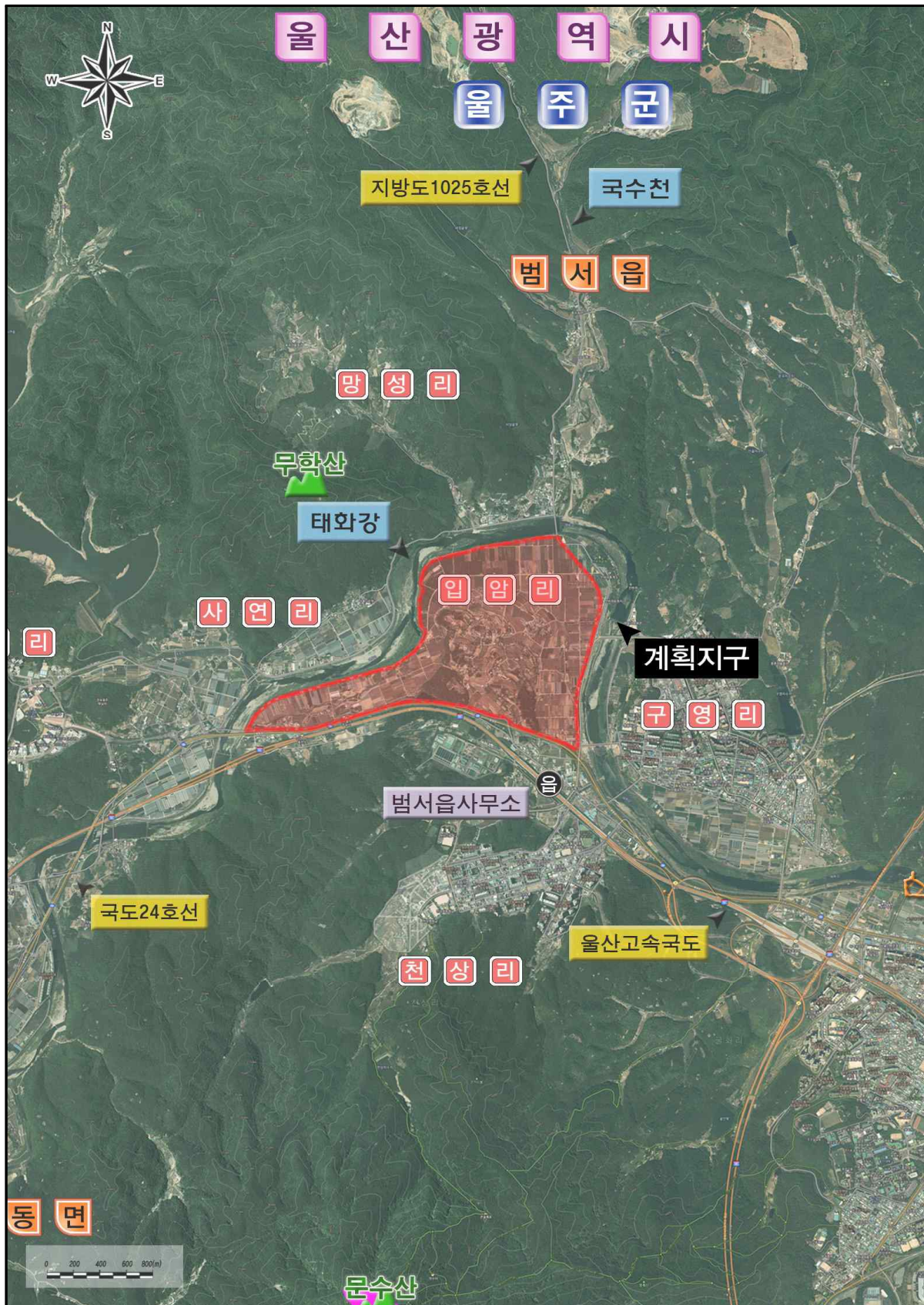
- 계 획 명 : 울산 선바위 공공주택지구
-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일원
- 규 모 : 1,834,000㎡(개발제한구역 1,729,000㎡ 포함)
- 계획인구 : 36,549인(14,912세대)
- 계획기간 : 2022년 ~ 2030년
- 계획수립기관(지정·승인권자) : 국토교통부
- 협의기관 : 환경부

1.4 계획의 추진경위

- 2021.04 : 공공주택지구 지정제안(한국토지주택공사 → 국토교통부)
- 2021.04.29.~05.13 : 공공주택지구 지정 주민의견 청취공고
- 2021.05 :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제출



[그림 1 - 1] 계획지구 위치도



(그림 1 - 2) 계획지구 위치도(위성지도)

제2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2.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의견수렴 개요

2.1.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

- 근거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제11조,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
- 계획수립기관(지정·승인권자) : 국토교통부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 총 9인(국토교통부, 환경부, 지자체, 관련전문가 등)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기간 : 2021.06.22. ~ 2021.07.05.
- 결정사항 : 대상지역의 설정, 토지이용구상안, 대안,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

〈표 2.1.1 - 1〉 「환경영향평가법」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관련조항

<p>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p> <p>① 환경부장관, 계획 수립기관의 장, 계획이나 사업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이하 "승인기관의 장"이라 한다) 또는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1조와 제24조에 따른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31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제51조제2항에 따른 약식절차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 4. 제52조제3항에 따른 의견 수렴 내용과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원활한 환경영향평가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이하 "환경영향평가협의회"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되,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보건법」 제13조에 따라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민간전문가 외에 건강영향평가분야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환경영향평가협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1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p> <p>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장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사업계획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2.토지이용구상안 / 3.대안 / 4.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p>② 행정기관 외의 자가 제안하여 수립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제안하는 자가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p>

2.2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2.2.1 대상지역의 설정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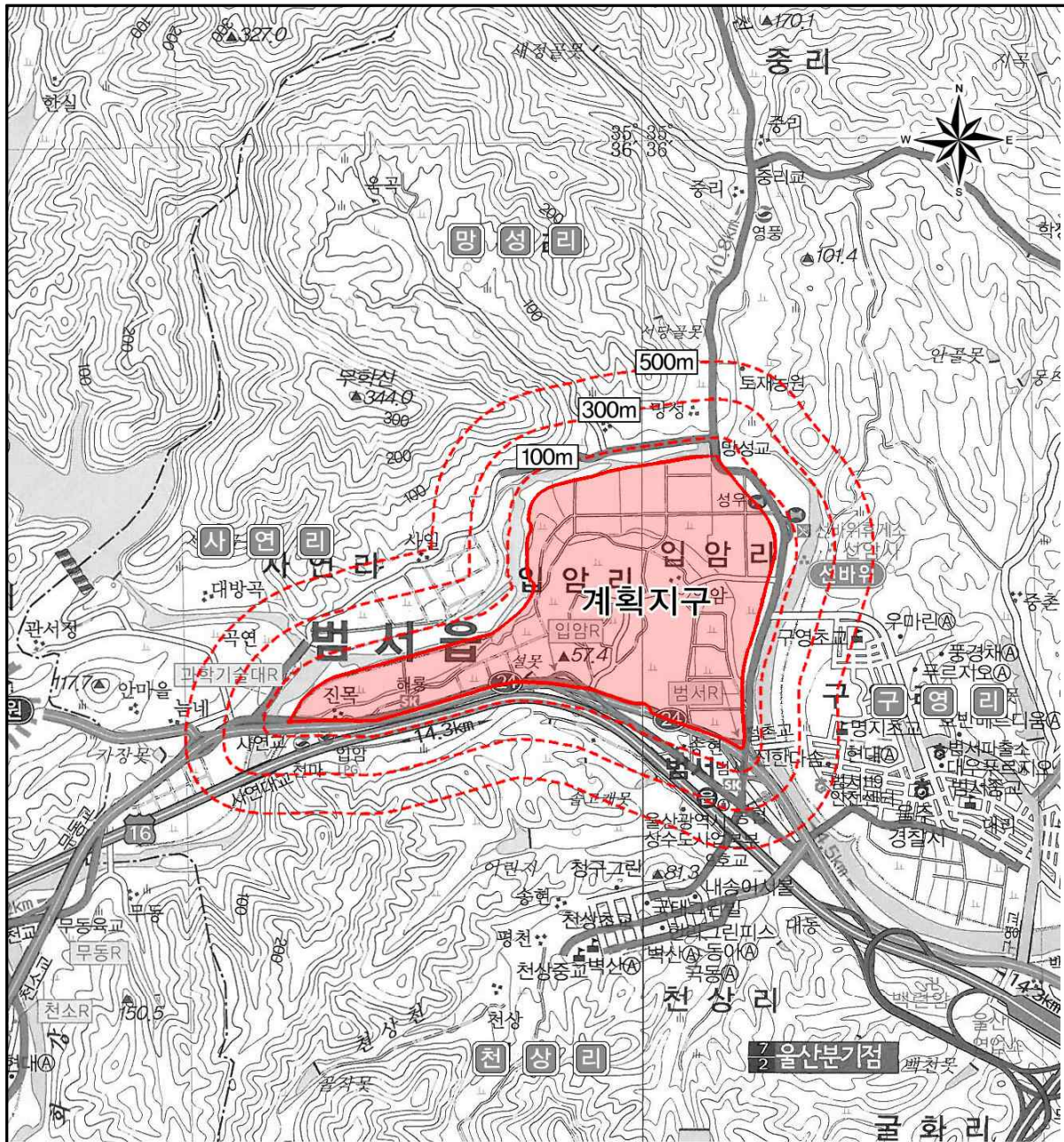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 제2020-289호」,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2017.12,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 2013.01, 환경부」 등을 참고함.
- 본 계획시행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항목은 <표 2.1 - 1>과 같으며, 계획시행에 따른 환경적 영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계획지의 특성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의견 등을 반영하여 항목별로 평가 대상지역을 설정함

<표 2.2.1 -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평가항목		평가대상지역 설정 기준 및 사유	대상지역 설정	
			공간적	시간적
계획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대안설정·분석의 적절성 	○ 계획지구 및 주변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시 ○ 운영시
입지의 타당성	자연환경의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지구를 포함한 조사지역의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계획시행으로 인한 생물의 다양성·서식지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 계획지구 주변 태화강 일대 수계 생물상에 대한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물상 :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100m 이내 ○ 동물상 :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500m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시 ○ 운영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고 및 경사 분석에 따른 입지 검토 ○ 절·성토로 인한 지형의 변화 ○ 강우시 토사유출 및 비옥토 유실 지역 	○ 계획지구	○ 공사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 수립에 따른 경관변화 예상 지역 ○ 건축물의 높이, 형태, 배치 등 경관영향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 및 저감방안 	○ 계획지구 및 주변 지역	○ 운영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시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 발생 및 공사투입인원으로 인한 우수 유입 가능수계 ○ 운영시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는 수계 	○ 계획지구 및 주변 수계(태화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시 ○ 운영시

<표 2.2.1 - 1> 계 속

평가항목		평가대상지역 설정 기준 및 사유		대상지역 설정		
				공간적	시간적	
입지의타당성	생활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의 부합성	기상	○계획지구가 위치한 지역의 기상현황 파악 ○계획 수립에 따른 국지적 기상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공사시 ○운영시
			대기질	○공사시 토사이동 및 장비투입에 따른 대기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계획지구의 위치적 특성상 500m 이내에 기존 주거지 등 주요 정온시설 ○운영시 난방연료 사용 및 주변 차량운행 등에 의한 대기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500m 이내	○공사시 ○운영시
			악취	○계획지구 주변 기 운영중인 정수장(울산 상수도 사업본부 천상정수사업소) 등의 악취영향	○계획지구	○운영시
			토양	○공사시 장비투입에 따른 폐유발생 및 지장물 철거 등에 의한 토양오염이 예상되는 지역	○계획지구	○공사시
			소음·진동	○공사시 건설장비 가동으로 인한 소음·진동 영향 예상지역 ○계획지구 300m 이내에 위치하는 기존 주거시설 등 주요 정온시설과 기존 소음 발생시설인 국도24호선, 울산고속도로 등이 위치 ○운영시 계획지구 내 신축공공주택에서의 도로교통 소음 영향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300m 이내	○공사시 ○운영시
			일조장해	○공동주택 및 건축물 입지로 인한 일조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운영시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계획지구 주변 환경기초시설 연계처리 적정성 검토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공사시 ○운영시		
	자원·에너지순환의 효율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공사시 건설폐기물, 분뇨 등 폐기물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운영시 생활폐기물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계획지구	○공사시 ○운영시	
		온실가스	○계획시행으로 인한 건설장비 투입 및 토지이용 변화, 난방 등 연료사용에 의한 온실가스 발생	○계획지구	○공사시 ○운영시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상위계획 및 주변 계획을 반영한 계획 수립 ○계획수립에 따른 효율적 토지이용계획	○계획지구	○운영시	
인구 및 주거		○계획시행에 따른 인구 및 주거 변화에 따른 영향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운영시		



평가대상지역				
계획지구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계획지구 경계		
		100m	300m	500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형 및 생태축 보전 ○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 친환경적자원순환 - 온실가스 ○ 환경기준 부합성 - 악 취 - 토 양 ○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의 적정성 ○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수환경의 보전 ○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환경기준 부합성 - 기상 ○ 일조장해 ○ 인구 및 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물다양성 · 서식지 보전 - 식물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기준 부합성 - 소음 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물다양성 · 서식지 보전 - 동물상 ○ 환경기준 부합성 - 대기질

[그림 2.2.1 -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도

나. 환경영향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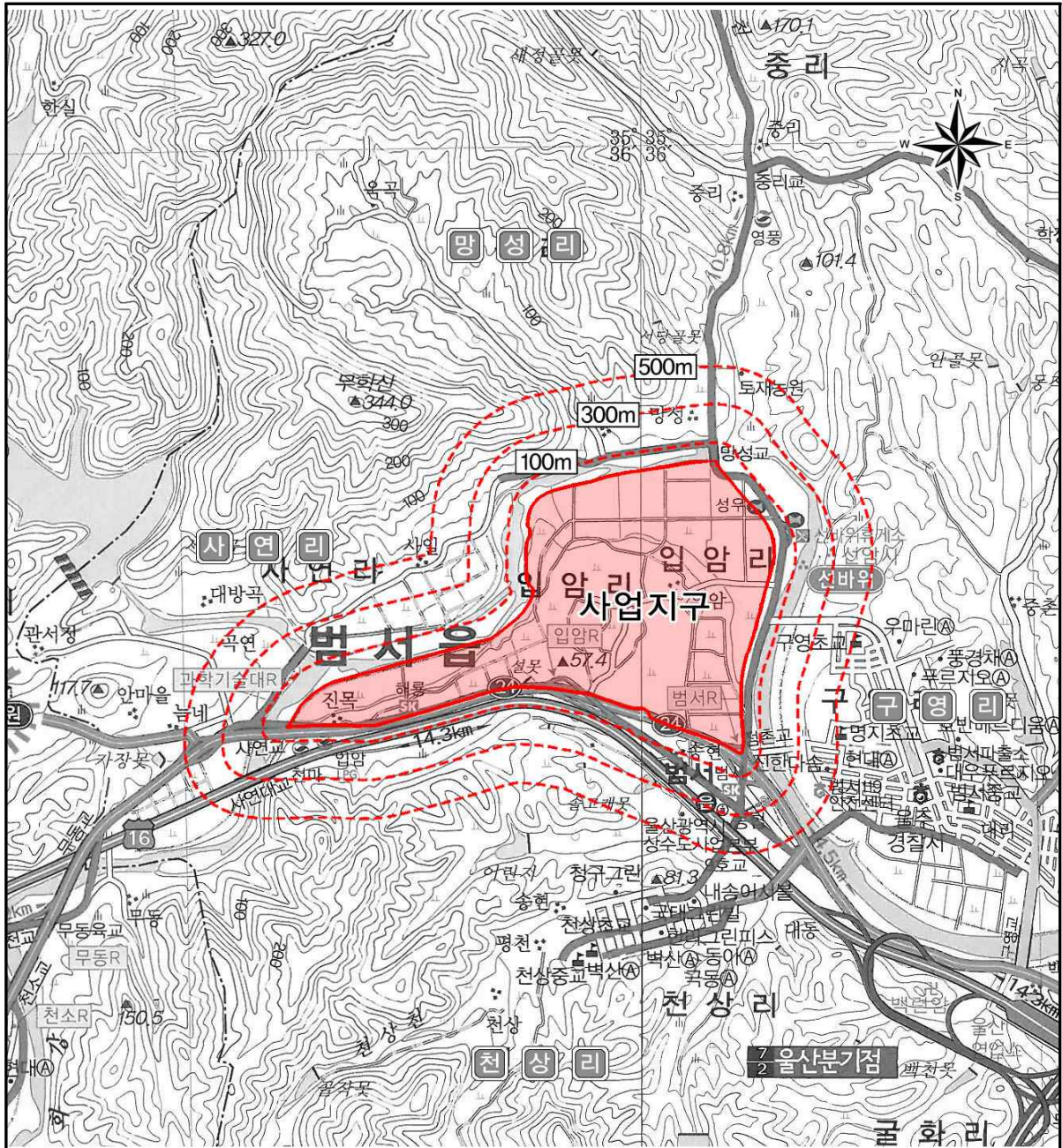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 제2020-289호」,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 2013.01, 환경부」 등을 참고함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항목은 자연생태 환경분야, 대기환경분야, 수환경분야, 토지환경분야, 생활환경분야, 사회·경제환경 분야 등으로, 계획시행에 따른 환경적 영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평가 대상지역을 설정함

<표 2.2.1 - 2>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평가항목		평가대상지역 설정 기준 및 사유	대상지역 설정	
			공간적	시간적
자연생태환경	동·식물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지구를 포함한 조사지역의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계획시행으로 인한 생물의 다양성·서식지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 사업지구 주변 태화강 일대 수계생물상에 대한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물상 :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100m 이내 ○ 동물상 :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500m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시 ○ 운영시
	자연환경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으로 인한 자연환경자산에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지구 및 주변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시 ○ 운영시
대기환경	기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지구가 위치한 지역의 기상현황 파악 ○ 계획 수립에 따른 국지적 기상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지구 및 주변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시 ○ 운영시
	대기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시 토사이동 및 장비투입에 따른 대기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사업지구의 위치적 특성상 500m 이내에 기존 주거지 등 주요 정온시설이 위치함 ○ 운영시 난방연료 사용 및 주변 차량운행 등에 의한 대기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500m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시 ○ 운영시
	악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지구 주변 기 운영중인 정수장(울산 상수도 사업본부 천상정수사업소) 등의 악취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시
	온실가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으로 인한 건설장비 투입 및 토지이용 변화, 난방 등 연료사용에 의한 온실가스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시 ○ 운영시

〈표 2.2.1 - 2〉 계 속

평가항목		평가대상지역 설정 기준 및 사유	대상지역 설정	
			공간적	시간적
수 환 경	수 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시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 발생 및 투입인원으로 인한 오수 유입 가능수계 운영시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는 수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지구 및 주변 수계(태화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시 운영시
	수리수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지구 및 주변수계 유황변화 분석 및 대책수립 운영시 도시화로 인한 강우시 홍수유출량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지구 및 주변 수계(태화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시 운영시
토 지 환 경	토지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이용상의 변화가수반되는 지역 상위계획 및 주변 계획을 반영한 계획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시 운영시
	토 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시 장비투입에 따른 폐유발생 및 지장물 철거 등에 의한 토양오염이 예상되는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시
	지형·지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절·성토로 인한 지형의 변화 강우시 토사유출 및 비옥토 유실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시
생 활 환 경	경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 수립에 따른 경관변화 예상지역 건축물의 높이, 형태, 배치 등 경관영향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 및 저감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지구 및 주변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시
	소음·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시 건설장비 가동으로 인한 소음·진동 영향 예상지역 사업지구 300m 이내에 위치하는 기존 주거시설 등 주요 정온시설과 기존 소음 발생시설인 국도24호선, 울산고속도로 등이 위치 운영시 사업지구 내 신축공공주택에서의 도로교통 소음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300m 이내 사업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시 운영시
	일조장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주택 및 건축물 입지로 인한 일조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지구 및 주변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시
	친환경적 자원순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시 건설폐기물, 분뇨 등 폐기물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운영시 생활폐기물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시 운영시
사회· 경제 환경	인구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시행에 따른 인구 및 주거 변화에 따른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지구 및 주변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시



평가대상지역				
사업지구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사업지구 경계		
		100m	300m	500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취 ○ 온실가스 ○ 토양 ○ 지형·지질 ○ 친환경적 자원순환 ○ 토지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환경자산 ○ 기상 ○ 수질(수리·수문) ○ 경관 ○ 일조장해 ○ 인구·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식물상 - 식물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음·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식물상 - 동물상 ○ 대기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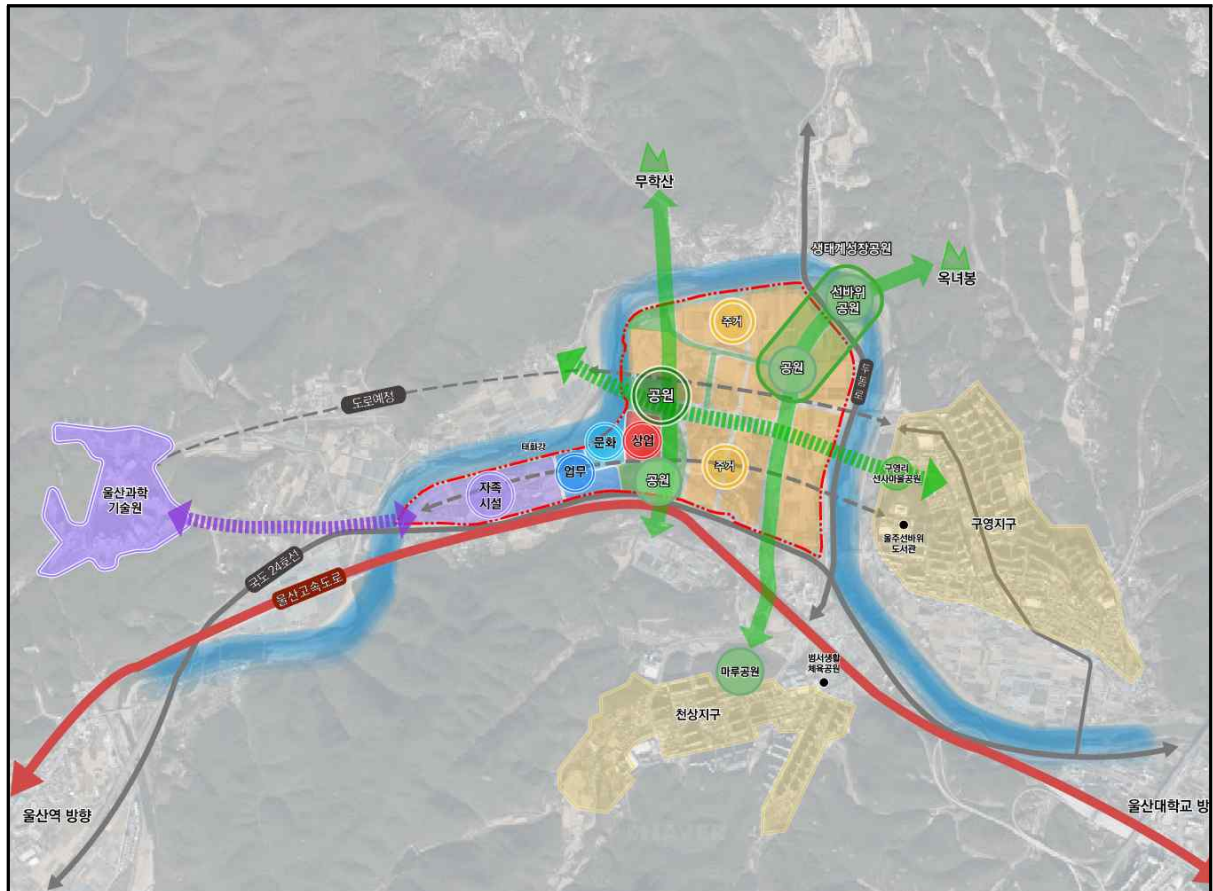
[그림 2.2.1 - 2]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도

2.2.2 토지이용구상안

- 현 단계는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로 토지이용 구상안은 다음과 같으며, 추후 지구계획 수립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지 토지이용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할 계획임

〈표 2.2.2 - 1〉 토지이용구상안

구분	계	주택건설 용지	상업시설 용지	도시지원 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소계	공원·녹지	기타시설
면적(m ²)	1,834,000	762,216	34,998	205,272	829,514	426,786	327,545
비율(%)	100.0	41.7	1.9	11.2	45.2	23.3	21.9



주) 본 절차는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개발기본계획)단계로 세부적인 토지이용계획은 향후 지구계획 수립 시 검토할 계획임

〔그림 2.2.2 - 1〕 토지이용계획구상안

2.2.3 대안의 설정

가. 대안의 종류

- 대안 선정은 환경적 목표와 기준 유지를 전제로 계획의 목표와 방향, 추진전략과 방법, 수요와 공급, 위치와 시기, 공법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조건을 변경한 결과를 토대로 선정하여야 함.
- 대안을 선정할 때는 개발기본계획(공공주택지구의 지정)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를 포함하여 3개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각 대안은 계획의 목적달성을 위해 실천 가능하고 현실적이어야 함.

나. 대안의 선정방법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 제2020-289호」에 의거하여 대안의 종류와 선정방법에 따라 선정함

〈표 2.2.3 - 1〉 대안의 선정방법

대안종류	대안의 선정방법	선정	비교방법
계획비교	○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가능한 상황(No action)과 계획을 수립했을 때 발생 가능한 상황을 대안으로 선정	◎	계획수립 여부
수단·방법	○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대안으로 선정		
수요·공급	○ 개발에 관한 수요·공급을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수요·공급량(규모)에 대한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	토지이용 계획 비교
입 지	○ 개발 대상 입지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대상지역 또는 그 경계의 일부를 조정하여 대안으로 선정	◎	계획지구 경계 조정
시기·순서	○ 개발 시기 및 순서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시행 시기 및 진행순서(예 : 연차별 개발) 등의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기 타	○ 상기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 또는 기타 관계행정 기관의 장이 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안		

다. 대안의 검토

1) 계획비교

- 계획수립(Action) 및 계획 미 수립(No Action)에 따른 대안별 환경적인 비교·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계획 비교에 따른 대안별 비교·결과는 아래 표와 같음.

<표 2.23 - 2> 계획 비교

평가영역	계획 수립시(Action)	계획 미 수립시(No Action)
토지이용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적인 개발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에 기여하며, 환경친화적인 개발이 가능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 울산과학기술원, 현대중공업 등 산학연 연계를 통한 도시 자족성 확보 ○ 지능형 도시인프라 구축을 통한 편리하고 안전한 스마트도시 조성 ○ 태화강, 무학산 등 자연환경을 품은 친환경 생태문화도시 조성 ○ 계획지구 주변 가로교통망(고속도로, 국도24호선 등)으로 인한 소음 영향을 최소화하는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적인 토지이용시 효율성 저하 또는 토지이용 계획수단의 변화없음
각종 보호지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백두대간 보호지역, 수변구역 등 각종 보호지역과 관련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백두대간 보호지역, 수변구역 등 각종 보호지역과 관련 없음
생태계 훼손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지구 내 생태자연도 1등급지, 야생생물 보호구역 등 보호지역은 없으며, 녹지·공원 등 친환경적 계획수립을 통한주요 생물종의 서식환경 제공 ○ 계획지구 내 천연기념물, 법적보호종 및 철새도래지 등 서식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는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지구는 농경지(전, 답)이 대부분으로 현 상태를 유지하여도 생태계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은 미미함 ○ 계획지구 내 천연기념물, 법적보호종 및 철새도래지 등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없음
지형의 훼손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고는 25m 미만이 95.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사도는 5° 미만 지역이 62.2%로 대부분 평탄지이며, 저감대책을 통해 지형훼손의 미치는 영향 최소화 ○ 현 지형을 최대한 이용하여 지형변화를 최소화하고, 주변지형과 연결성이 유지되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지구는 대부분 전, 답으로 낮은 구릉지에 둘러싸여 있으며, 대부분 평탄한 지형을 이루고 있으므로 현 상태를 유지하여도 지형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은 없음



<표 2.23 - 2> 계속

평가영역	계획 수립시(Action)	계획 미 수립시(No Action)
쾌적한 생활 환경의 유지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친환경 요소를 활용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확보 ○ 공원 및 근린생활시설 조성을 통한 주민편의 확보 및 쾌적한 생활환경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상태를 유지하게 되므로, 생활환경(대기질, 소음·진동 등)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시행으로 건축물 신축에 따른 선바위 등의 경관변화가 예상되나 적정 개발계획의 수립을 통하여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사업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환경기준의 유지 및 달성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시행으로 생활환경(대기질, 소음·진동 등)에 영향이 예상되나,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한 저감대책 수립으로 환경기준 유지 및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상태를 유지하게 되므로 생활환경(대기질, 소음·진동 등)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통하여 국민의 주거환경 안정과 토지이용 효율을 증대시키는 등 주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계획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선정	◎	

2) 입지에 따른 대안 비교

- 계획 수립(Action)에 따른 입지(계획지구 경계 조정) 변화를 통한 비교·분석을 실시함.



〈표 2.2.3 - 3〉 입지 비교

구분	대안1	대안2
지구 경계		
면적	○ 1,834,000m ²	○ 1,653,440m ²
장점 및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지구가 울산고속도로(장검IC) 인근 부지에 위치하며, KTX(울산역)와 차로 10분거리에 입지하여 광역교통 접근성이 우수함 ○ 국도24호선과 접하여 있어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함 ○ 울산과학기술원(UNIST)와 2km이내에 위치하여 연계개발 용이함 ○ 계획지구 서측 개발가능 부지를 확보 하므로 자족시설 등의 토지이용계획 수립에 용이함 ○ 계획지구 주변으로 구영지구(동측), 천상지구(남측) 등 기 개발지구와의 연계개발이 용이함 ○ 개발제한구역 1등급지를 일부 포함하여 공원 추가 면적 확보 필요 ○ 신축건축물에 의한 선바위 등의 경관 변화가 예상되나 적정 개발계획의 수립을 통하여 경관변화 최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지구가 울산고속도로(장검IC) 인근 부지에 위치하며, KTX(울산역)와 차로 10분거리에 입지하여 광역교통 접근성이 우수함 ○ 국도24호선과 접하여 있어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함 ○ 울산과학기술원(UNIST)과의 연계성 저하 ○ 개발가능 부지가 부족함 ○ 개발제한구역 1등급지를 일부 포함하여 공원 추가 면적 확보 필요 ○ 신축건축물에 의한 선바위 등의 경관 변화가 예상되나 적정 개발계획의 수립을 통하여 경관변화 최소화
선정 사유	○ 광역교통여건이 우수하고 울산과학기술원(UNIST)과의 연계한 개발이 용이하며, 개발가능지가 충분히 확보되는 대안1을 선정함	
선정	◎	

3) 수요·공급에 따른 대안 비교

- 수요·공급에 따른 대안별 검토를 위하여 토지이용계획 구상(안)에 대한 2가지 대안을 비교·분석하였음.

〈표 2.23 - 4〉 수요·공급 비교

구분	대안1	대안2																																			
토지이용계획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면적(m²)</th> <th>구성비(%)</th> </tr> </thead> <tbody> <tr> <td>총계</td> <td>1,834,000</td> <td>100.0</td> </tr> <tr> <td>주거</td> <td>764,216</td> <td>41.7</td> </tr> <tr> <td>상업</td> <td>34,998</td> <td>1.9</td> </tr> <tr> <td>공원녹지</td> <td>426,786</td> <td>23.3</td> </tr> <tr> <td>기타</td> <td>608,000</td> <td>33.1</td> </tr> </tbody> </table>	구분	면적(m ²)	구성비(%)	총계	1,834,000	100.0	주거	764,216	41.7	상업	34,998	1.9	공원녹지	426,786	23.3	기타	608,000	33.1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면적(m²)</th> <th>구성비(%)</th> </tr> </thead> <tbody> <tr> <td>총계</td> <td>1,834,000</td> <td>100.0</td> </tr> <tr> <td>주거</td> <td>723,568</td> <td>39.4</td> </tr> <tr> <td>상업</td> <td>71,200</td> <td>3.9</td> </tr> <tr> <td>공원녹지</td> <td>453,300</td> <td>24.7</td> </tr> <tr> <td>기타</td> <td>585,932</td> <td>31.9</td> </tr> </tbody> </table>	구분	면적(m ²)	구성비(%)	총계	1,834,000	100.0	주거	723,568	39.4	상업	71,200	3.9	공원녹지	453,300	24.7	기타	585,932
구분	면적(m ²)	구성비(%)																																			
총계	1,834,000	100.0																																			
주거	764,216	41.7																																			
상업	34,998	1.9																																			
공원녹지	426,786	23.3																																			
기타	608,000	33.1																																			
구분	면적(m ²)	구성비(%)																																			
총계	1,834,000	100.0																																			
주거	723,568	39.4																																			
상업	71,200	3.9																																			
공원녹지	453,300	24.7																																			
기타	585,932	31.9																																			
특징	○ 계획지구 서측에 위치한 울산과학기술원과 연계한 토지이용구상안	○ 자족시설, 업무·상업시설을 계획지구 중심부에 배치시킨 토지이용 구상안																																			
장점 및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지구내 약 1.5만호 공급 가능함 ○ 울산과학기술원(UNIST)과 연계하여 계획지구 서측에 자족기능을 집적시킴으로서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 증대 ○ 주변 토지이용현황과 연계한 주거지역 배치로 토지이용 효율성 증대 ○ 태화강 및 주변 공원과 연계한 공원·녹지축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지구내 약 1.5만호 공급 가능함 ○ 울산과학기술원(UNIST)과의 연계성 저하 도면상에 표시 ○ 주거지역의 분산배치로 주거지역과의 연속성 등 토지이용효율 저하 ○ 일부 주거지역에서의 통학거리 증가 ○ 계획지구 서측 주거지역에서의 울산고속도로 소음 영향 예상 																																			
선정 사유	○ 울산과학기술원(UNIST)과 연계하여 서측에 자족시설을 위치하는 토지이용계획으로 토지이용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대안1을 선정함																																				
선정	●																																				

2.2.4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1) 평가항목 설정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한 평가항목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2017. 12, 환경부」 및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2020-289호)」을 근거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제시된 [별표1]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을 참고하여 선정함.

〈표 2.2.4 - 1〉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의 설정

평가항목		설정사유		
계획의 적정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등과의 적정성 검토 필요 ○ 환경관계법상의 환경보전시책 부합여부 및 입지규제 저촉여부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 “계획비교”, “입지” 및 “수요·공급” 등의 대안설정 및 분석	
입지의 타당성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 서식지의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보호종 출현여부 파악 및 보호종 출현시 보호대책 수립 필요 ○ 생태자연도1등급, 식생보전II등급이상 지역 훼손 여부 ○ 야생생물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등 자연환경자산 파악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 부지조성, 절·성토 등 계획수립시 지형변화 예상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경관심의 대상여부 검토 필요 ○ 계획시행으로 인한 경관변화 예상
		수환경의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시 토사유출 및 운영시 점·비점오염원 발생 및 저감 방안 수립 필요 ○ 수환경 관련 보호지역 영향 여부 ○ 태화강의 수리·수문 현황 및 치수 안정성 부합여부 검토 필요
생활 환경의 안정성	환경 기준 부합성	기상	○ 계획수립에 따른 국지적 기상 변화 예상, 기초자료 활용	
		대기질	○ 토공사와 연료 사용 등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발생으로 인한 영향 및 저감방안 수립 필요	
		악취	○ 계획지구 주변 악취배출시설 현황 및 악취 현황 파악	

<표 2.24 - 1> 계속

평가항목			설정사유	
입지의타당성	생활환경의안정성	토양	○ 계획시행으로 폐유발생, 지장물 철거 등에 의한 토양오염 우려기준과의 부합 여부	
		환경기준부합성	소음·진동	○ 공사시 건설장비 가동 및 운영시 교통량 증가에 따른 영향 ○ 소음환경기준 등과의 부합성
			일조장해	○ 계획수립에 따른 일조권 변화 예상
	환경기초시설의적정성		○ 계획수립시 오수, 폐기물 등 처리계획의 적정성 검토 ○ 환경기초시설의 연계처리 여부 등	
	자원·에너지순환의효율성	친환경적자원순환	○ 계획수립시 폐기물 발생 및 처리대책 수립 필요	
		온실가스	○ 공사시 투입장비 및 운영시 연료사용, 에너지이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발생에 따른 영향 검토	
	사회·경제환경과의조화성	환경친화적토지이용	○ 지속가능한 주택단지를 위한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 파악 및 편입 토지 보상대책 수립	
		인구·주거	○ 계획수립에 따른 인구·주거 변화 예상	

2)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 항목별 평가범위 등의 설정

- 본 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하여 선정된 현황조사, 예측 및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음

〈표 2.2.4 - 2〉 평가 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

구 분	현황조사	예측 및 평가방법	평가범위
자연 환경의 보전	① 조사내용 ○ 식물상 현황 - 식물 분포 및 식생, 습지 분포 등 ○ 동물상 현황 - 분류군별 종 분포 및 서식현황 ○ 육수생물상 현황 - 인접 하천의 분류군별 종 분포 및 서식 현황 ○ 특이할만한 종 분포 및 서식 현황 ○ 생태자연도 및 생태계현황 ② 조사 범위 ○ 중점: 계획지구 및 주변하천 일대 ○ 광역: 계획지구 경계 500m 이내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④ 조사지점 ○ 계획지구 내 ○ 식물상 :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100m이내(2회 조사) ○ 동물상 :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500m이내(2회 조사) - 조류 : 태화강구간 4km 이내	○ 식물상 - 식물상 및 식생변화, 주요종과 개체에 대한 영향, 훼손수목 발생 및 예측 ○ 동물상 - 분류군별 계획시행으로 인한 서식지훼손 및 간섭에 따른 영향예측 및 평가 ○ 육수생물상 - 하천점유 및 토사 유출에 따른 영향, 수계의 연속성 단절이나 간섭에 따른 영향 ○ 기타, 보전하여야 할 동·식물 및 그 서식환경 파악, 계획시행으로 인한 영향 종합적 예측	○ 식물상 :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100m 이내 ○ 동물상 :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500m 이내
	① 조사내용 ○ 지형형상, 지질상황, 토질성상, 사면안정성 검토, 연약지반 검토 ○ 특이지형 ② 조사 범위 ○ 계획지구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 절·성토에 의한 지형변화 파악 ○ 토사유출, 비옥토 유출, 사면발생, 사면안정성 검토 ○ 계획시행으로 인한 생태축 및 산림축 단절여부 검토	○ 계획지구

<표 2.24 - 2> 계속

구 분		현황조사	예측 및 평가방법	평가범위	
자연 환경의 보전	주변자연 경관에 미치는 영향	① 조사내용 ○ 경관 우수지역 현황 ○ 경관 훼손 예상지역 현황 ② 조사 범위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현지조사를 통한 주요 조망점 선정(근경·중경·원경)	○ 계획시행으로 인한 경관변화여부 및 경관 변화정도 예측 ○ 경관변화 최소화 대책 수립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수환경의 보전	① 조사내용 ○ 계획지구 주변수계에 대한 환경기준 설정항목의 수질 현황 ② 조사 범위 ○ 계획지구 주변수계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④ 조사지점 ○ 지표수 7개 지점(2회 조사) ○ 지하수 3개 지점(2회 조사)	○ 공사시 토사유출로 인하여 주변 수계에 미치는 영향 검토	○ 계획지구 및 주변수계(태화강)	
생활 환경의 안정성	환경기 준의 부 합 성	기 상	① 조사내용 ○ 계획지구 주변 기상현황 ② 조사 범위 ○ 계획지구(인근 기상대) ③ 조사방법 ○ 인근 기상관측자료 분석·정리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국지적 기상특성 분석 - 기상연보 등 활용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대 기 질	① 조사내용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의 대기 오염원(면·산·점) 현황 파악 ② 조사 범위 ○ 직·간접 영향권: 500m 이내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④ 조사지점 ○ 7개 지점(2회 조사)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의 대기오염도 등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계획시행시 영향 예측 및 대기환경기준과 비교·평가	○ 계획지구 경계로 부터 500m 이내
	악 취	① 조사내용 ○ 계획지구 주변의 악취유발 시설 및 악취현황 파악 ② 조사 범위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④ 조사지점 ○ 3개 지점(2회 조사)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 주변 환경기초시설 및 산업단지 현황파악 및 악취 영향 정성적 예측, 배출허용기준과 비교·평가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표 2.24 - 2> 계속

구 분		현황조사	예측 및 평가방법	평가범위	
생활 환경의 안정성	환경 기준의 부합성	토양 ① 조사내용 ○ 토양오염우려기준 설정항 목의 토양오염도 현황 ② 조사 범위 ○ 계획지구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④ 조사지점 ○ 표토 3개 지점(2회조사)	○ 계획시행으로 인한 토양오 염 영향예측 ○ 지장물 철거시 토양오염 여부파악 및 대책 수립	○ 계획지구	
	일 조 장 해	소음· 진동	① 조사내용 ○ 계획지구 주변 소음·진동 현황 및 주요 발생원 조사 ② 조사 범위 ○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300m 이내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④ 조사지점 ○ 9개 지점(2회조사)	○ 공사시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 영향예측 ○ 운영시 차량운행에 따른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소 음영향예측	○ 계획지구 경 계 로 부 터 300m 이내
		환경 기초시설 의 적정성	① 조사내용 ○ 계획지구 주변 건물 현황 ② 조사 범위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건축 물 입지로 인한 계획지구 내 일조영향 예측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환경 기초시설 의 적정성	① 조사내용 ○ 계획지구 주변 환경기초시 설 현황 ② 조사 범위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	○ 오·폐수 및 폐기물 등의 적정처리를 위한 계획지구 주변 환경기초시설 현황 파악 및 연계처리 적정성 검토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자원 에너지 순환 의 효율 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① 조사내용 ○ 자원 및 에너지순환 관련 법규정 적용, 준수여부 검 토 ② 조사 범위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	○ 계획시행으로 인한 폐기물 발생량 예측 및 처리방안 ○ 폐기물 처리 정책을 고려 한 자원활용 및 에너지 순 환성 검토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표 2.24 - 2>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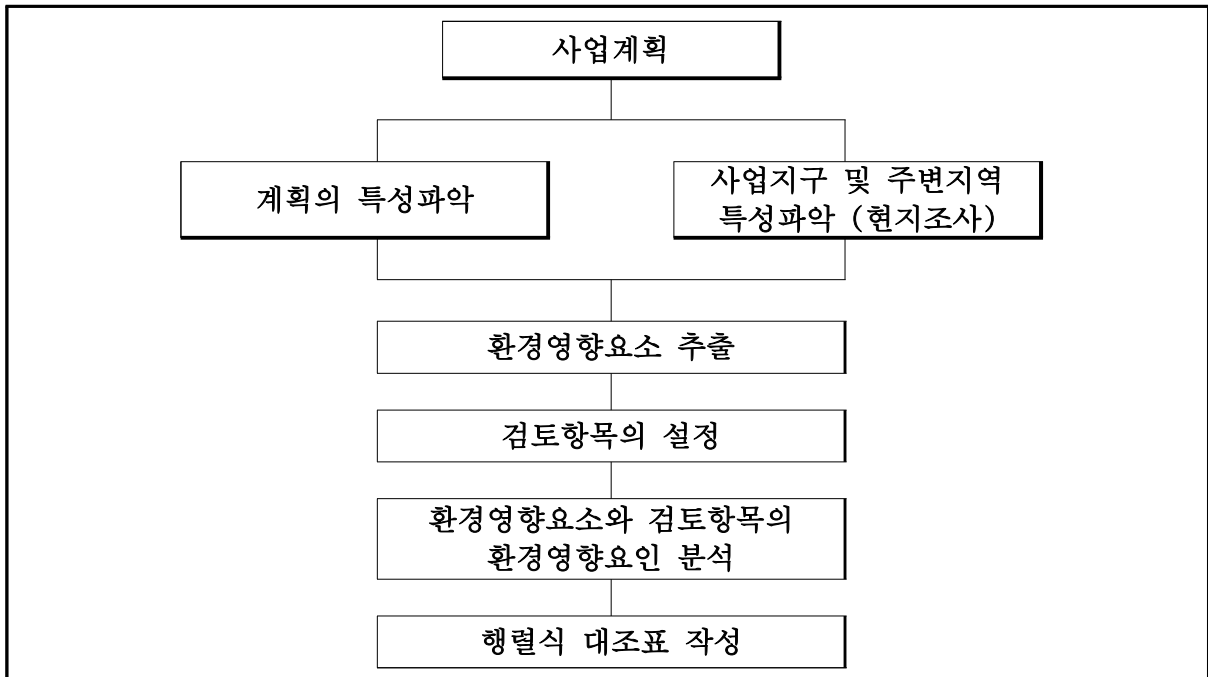
구 분		현황조사	예측 및 평가방법	평가범위
생활 환경의 안정성	자원 에너지 순환 의 효율 성	① 조사내용 ○ 계획지구 내 온실가스 배출시설 및 에너지 이용시설 현황조사 ② 조사 범위 ○ 계획지구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유사사례	○ 공사시 및 운영시 연료사용량 산정 및 배출계수를 이용한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 예측	○ 계획지구
	환경친화 적토지이 용	① 조사내용 ○ 용도 및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 편입용지 및 지장물 파악 ② 조사 범위 ○ 계획지구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유사사례	○ 주변 환경 및 지형 등 여건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계획 수립여부 검토	○ 계획지구
사회 경제 환경 과의 조화성	인구 · 주거	① 조사내용 ○ 인구 및 주거 현황 파악, 장래 변화 예측 ② 조사 범위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	○ 계획 시행 전·후에 따른 인구·주거 변화 예측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나. 환경영향평가

1) 평가항목의 설정

가) 환경영향요소 추출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0-289호)」 제2조에 의하면, 「환경영향요소라 함은 사업계획의 내용 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원인이 되는 요소」라고 정의되어 있음.
- 환경영향평가서 주변 현황 및 사업계획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단계별로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분석하여 환경영향요소를 추출하였음.



[그림 6.2 - 1] 환경영향요소 추출 및 평가항목 설정 흐름도

<표 6.2 - 1> 환경영향요소 추출

구 분	공 종	환경영향요소
공사시	자연형질의 변화	○ 절·성토에 의한 지형변화
	건설자재 및 토사운반	○ 공사 장비 이동 및 건설자재 운송
	시설물 공사	○ 토공기초 및 배수관로 공사 및 조경식재 등 ○ 공사인부 및 장비투입
운영시	시설물 이용	○ 시설물 및 공동주택 운영에 따른 오수 발생 ○ 시설물 이용차량의 통행에 따른 영향

나) 평가항목의 설정

- <표6.2-1>에서 추출된 본 사업의 환경영향요인과 연계하여 사업계획과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추출한 환경영향요소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2020-289호, 2020. 12,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대기질·악취·소음·진동), 2013. 01, 환경부」 및 유사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16개 항목을 평가대상 항목으로 설정하였음.

<표 6.2 - 2>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중 평가항목

구 분	항목수	평 가 항 목
대기환경	4개	○ 기상, 대기질, 악취, 온실가스
수 환 경	3개	○ 수질, 수리·수문, 해양환경
토지환경	3개	○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자연생태환경	2개	○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생활환경	7개	○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위락, 경관, 위생·공중보건, 전파장해, 일조장해
사회·경제환경	3개	○ 인구, 주거, 산업
계	22개	-

<표 6.2- 3 > 본 사업의 평가대상 항목 설정

구 분	항목수	평 가 항 목
대기환경	4개	○ 기상, 대기질, 악취, 온실가스
수 환 경	2개	○ 수질, 수리·수문
토지환경	3개	○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자연생태환경	2개	○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생활환경	4개	○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경관, 일조장해
사회·경제환경	1개	○ 인구, 주거
계	16개	-

다) 중점평가, 현황조사, 제외항목 선정

(1) 선정근거

- 환경인자(환경항목) 중 본 사업과 관련하여 평가해야 하는 중요 평가항목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2020-289호, 2020. 12,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스코핑 가이드라인 - 평가항목 범위 결정 등을 위한 지침서(2011. 12)」의 대상사업별 평가항목선정 참고자료 중 「가. 도시의 개발사업」에 명기된 주요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본 평가에서는 사업의 계획 및 지역 특성을 토대로 사업시행에 따라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가항목에 대하여 총 13개 항목을 중점평가항목으로 설정하였음.
- 또한, 지역특성 파악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3개 항목(기상, 악취, 인구·주거)을 현황조사 항목으로 선정하고, 나머지 5개 항목(해양환경, 위생·공중보건, 위락, 전파장해, 산업)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하였음.

〈표 6.2 - 4〉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중 주요평가 항목

구 분	대 상 사 업	주 요 평 가 항 목
가.도시의 개발사업	1)도시개발(주택지조성 또는 시가지조성 등)사업 2)도시정비사업 3)도시계획시설사업중 다음의 사업 (운하, 유통업무 설비, 주차장시설, 시장) 4)대지조성사업 5)택지개발사업 또는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1) 내지 5)의 사업 지형·지질,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토지이용, 대기질, 수질,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일조장해, 위락·경관

자료 : 환경영향평가 스코핑 가이드라인, 2011. 12, 환경부

[2] 중점평가, 현황조사, 제외항목 선정사유

- 사업계획 및 지역환경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중점평가항목 13개항목, 현황조사 3개항목, 제외 5항목으로 선정하고 그 사유를 제시함

<표 6.2 - 5> 중점평가, 현황조사, 제외항목 선정사유

분 야	항 목	선정결과			선정결과에 대한 사유
		중점	현황	제외	
자연 생태 환경	동·식물상	○	-	-	○ 공사 및 운영시 동·식물상(보호대상 동·식물 등) 영향예측 및 대책
	자연환경 자산	○	-	-	○ 기존문헌 등을 통한 사업지구 및 주변 자연환경자 산 현황 파악
대기 환경	기상	-	○	-	○ 사업지구 주변 대기질 예측시 기초자료로 활용(기 상대 및 인근AWS자료)
	대기질	○	-	-	○ 공사시 토사이동 및 장비투입에 따른 대기오염물 질 발생 ○ 운영시 차량 및 시설 등 연료 사용에 의한 대기오 염물질 발생
	악취	-	○	-	○ 사업지구 주변 악취배출시설 현황 및 악취 현황 파악
	온실가스	○	-	-	○ 공사 및 운영시 온실가스 발생
수 환경	수질	○	-	-	○ 공사시 강우에 따른 토사유출로 수계(태화강)에 미치는 영향 예상 ○ 공사인부 투입에 의한 오수 발생 ○ 운영시 오수, 비점오염물질 발생 및 적정처리 대책
	수리·수문	○	-	-	○ 토지이용 변화 등에 따른 수리·수문 변화 검토
	해양환경	-	-	○	○ 사업계획 시행과 연관 없음
토지 환경	토지이용	○	-	-	○ 위치·규모 등에 관한 대안 검토·선정
	토양	○	-	-	○ 사업지구의 토양오염 현황 및 운영시 토양오염 요 인 파악
	지형·지질	○	-	-	○ 지형·지질 현황조사 및 흙갈기·흙쌓기에 따른 영향 분석 및 대책 수립

<표 6.2 - 5> 계 속

분 야	항 목	선정결과			선정결과에 대한 사유
		중점	현황	제외	
생활 환경	친환경적 자원순환	○	-	-	○ 공사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 예상 및 적법 처리 대책 수립
	소음·진동	○	-	-	○ 공사시 공사 장비투입에 의한 소음·진동 영향 예상 ○ 운영시 주변 국도, 고속도로 및 내부도로 이용 차 량에 의한 도로교통소음 발생
	위락	-	-	○	○ 사업계획 시행과 연관 없음
	경관	○	-	-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경관요소 파악 ○ 사업계획 시행으로 인한 경관 영향 분석
	위생·공중보건	-	-	○	○ 사업계획 시행과 연관 없음
	전파장해	-	-	○	○ 사업계획 시행과 연관 없음
	일조장해	○	-	-	○ 사업계획 시행으로 인한 일조장해 영향 분석
사회· 경제 환경	인구·주거	-	○	-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인구 및 주거현황 파악
	산업	-	-	○	○ 사업계획 시행으로 인한 영향 미미함에 따라 제외

2) 평가 범위 및 방법 설정

가) 평가 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 본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위하여 선정된 현황조사, 예측 및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음.

〈표 6.2 - 7〉 평가 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

구 분	현황조사	예측 및 평가방법	평가범위
자연 생태 환경	동·식 물상 ① 조사내용 ○ 식물상 현황 - 식물 분포 및 식생, 습지 분포 등 ○ 동물상 현황 - 분류군별 종 분포 및 서식현황 ○ 육수생물상 현황 - 인접 하천의 분류군별 종 분포 및 서식 현황 ○ 특이할만한 종 분포 및 서식 현황 ○ 생태자연도 및 생태계현황 ② 조사 범위 ○ 중점: 사업지구 및 주변하천 일대 ○ 광역: 사업지구 경계 300m 이내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④ 조사지점 ○ 사업지구 내 ○ 식물상 :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100m이내(2회 조사) ○ 동물상 :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300m이내(2회 조사) - 조류 : 태화강구간 4km 이내	○ 식물상 - 식물상 및 식생변화, 주요종과 개체에 대한 영향, 훼손수목 발생 및 예측 ○ 동물상 - 분류군별 사업시행으로 인한 서식지훼손 및 간섭에 따른 영향예측 및 평가 ○ 육수생물상 - 하천점유 및 토사 유출에 따른 영향, 수계의 연속성 단절이나 간섭에 따른 영향 ○ 기타, 보전하여야 할 동·식물 및 그 서식환경 파악,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종합적 예측	○ 식물상 :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100m 이내 ○ 동물상 :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500m 이내
	자연환경 자산 ① 조사내용 ○ 자연환경자산의 분포현황조사 - 멸종위기 야생생물, 습지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백두대간 보호지역 등 ② 조사범위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 자연환경자산 및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큰 지역에 대한 훼손여부 파악 및 보전방안 수립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표 6.2 - 7> 계 속

구 분		현황조사	예측 및 평가방법	평가범위
대 기 환 경	기상	① 조사내용 ○사업지구 주변 기상현황 ② 조사 범위 ○사업지구(인근 기상대) ③ 조사방법 ○인근 기상관측자료 분석·정리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국지적 기상특성 분석 - 기상연보 등 활용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대기질	① 조사내용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대기 오염원(면·선·점) 현황 파악 ② 조사 범위 ○직·간접 영향권: 500m 이내 ③ 조사방법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④ 조사지점 ○7개 지점(2회 조사)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대기오염도 등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시행시 영향 예측 및 대기환경기준과 비교·평가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500m 이내
	악취	① 조사내용 ○사업지구 주변의 악취유발 시설 및 악취현황 파악 ② 조사 범위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④ 조사지점 ○3개 지점(2회 조사)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주변 환경기초시설 및 산업단지 현황파악 및 악취영향 정성적 예측, 배출허용기준과 비교·평가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온실가스	① 조사내용 ○운영시 사업지구 내 온실가스 배출시설 및 에너지 이용시설 현황조사 ② 조사범위 ○온실가스 변화가 예상되는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문헌자료 및 유사사례를 수집하여 분석·정리	○공사시 및 운영시 연료사용량 산정 및 배출계수를 이용한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 예측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수 환 경	수질 (수리 · 수문)	① 조사내용 ○ 주변 수계에 미치는 영향 ② 조사범위 ○ 사업지구 및 주변수계 ③ 조사방법 ○ 기존 관측통계자료 활용	○공사시 토사유출로 인하여 주변 수계에 미치는 영향 검토 ○공사 투입 인부에 의한 오수 발생 ○점 및 비점오염물질 발생, 배출부하량 예측	○사업지구 및 주변수계

<표 6.2 - 7> 계 속

구 분		현황조사	예측 및 평가방법	평가범위
토 지 환 경	토지이용	① 조사내용 ○ 용도 및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 편입용지 및 지장물 파악 ② 조사 범위 ○ 사업지구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유사사례	○ 주변 환경 및 지형 등 여건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계획 수립 여부 검토	○ 사업지구
	토 양	① 조사내용 ○ 토양오염우려기준 설정항목의 토양오염도 현황 ② 조사 범위 ○ 사업지구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④ 조사지점 ○ 표토 3개 지점(2회조사)	○ 사업시행으로 인한 토양 오염 영향예측 ○ 지장물 철거시 토양오염 여부파악 및 대책 수립	○ 사업지구
	지형·지질	① 조사내용 ○ 지형형상, 지질상황, 토질 성상, 사면안정성 검토, 연약지반 검토 ○ 특이지형 ② 조사 범위 ○ 사업지구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 절·성토에 의한 지형변화 파악 ○ 토사유출, 비옥토 유출, 사면발생, 사면안정성 검토 ○ 사업시행으로 인한 생태축 및 산림축 단절여부 검토	○ 사업지구
생 활 환 경	친환경적 자원순환	① 조사내용 ○ 자원 및 에너지순환 관련 법규정 적용, 준수여부 검토 ② 조사 범위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	○ 사업시행으로 인한 폐기물 발생량 예측 및 처리 방안 ○ 폐기물 처리 정책을 고려한 자원활용 및 에너지 순환성 검토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소음·진동	① 조사내용 ○ 사업지구 주변 소음·진동 현황 및 주요 발생원 조사 ② 조사 범위 ○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300m 이내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④ 조사지점 ○ 9개 지점(2회조사)	○ 공사시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 영향예측 ○ 운영시 차량운행에 따른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소음영향예측	○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300m 이내

<표 6.2 - 7> 계 속

구 분		현황조사	예측 및 평가방법	평가범위
생활 환경	경관	① 조사내용 ○ 경관 우수지역 현황 ○ 경관 훼손 예상지역 현황 ② 조사 범위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현지조사를 통한 주요 조망점 선정(근경·중경·원경)	○ 사업시행으로 인한 경관 변화여부 및 경관 변화 정도 예측 ○ 경관변화 최소화 대책 수립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일조장해	① 조사내용 ○ 사업지구 주변 건물 현황 ② 조사 범위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건축물 입지로 인한 사업지구 내 일조영향 예측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사회 경제 환경	인구주거	① 조사내용 ○ 인구 및 주거 현황 파악, 장래 변화 예측 ② 조사 범위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	○ 사업 시행 전·후에 따른 인구·주거 변화 예측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2.2.5 환경현황 조사계획

가. 환경영향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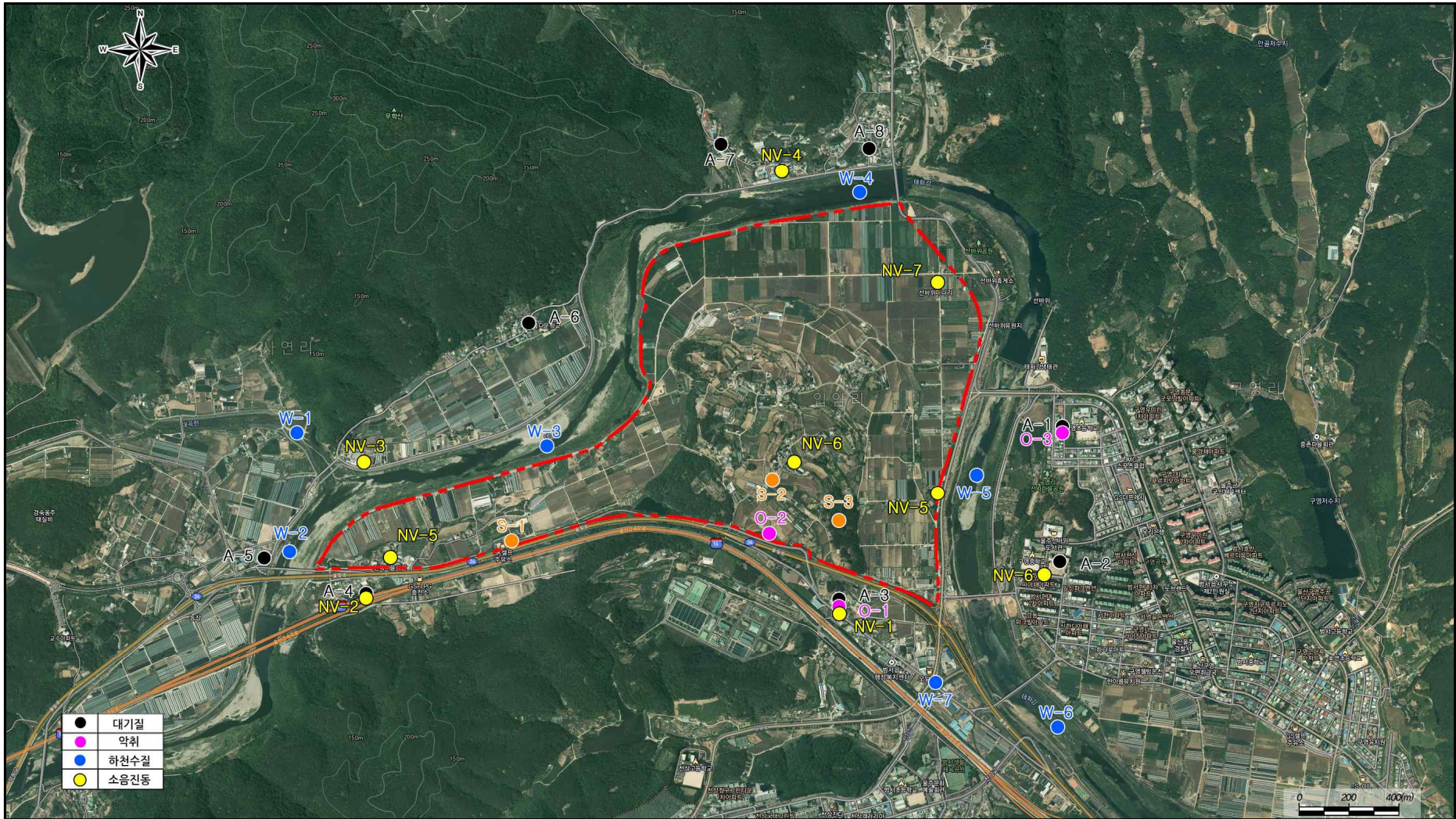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의 환경 현황을 파악하고, 계획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계획지구 내 및 주변에 분포하는 주거지역, 시설물 등을 대상으로 환경질(대기질, 악취, 토양, 소음진동, 지표수질, 지하수질) 측정지점을 선정하였음.

〈표 2.25 - 1〉 조사지점 및 선정사유

구 분		조사지점	비고		
환경기준의부합성	대기질	A-1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749-9	주거지역	
		A-2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855-1	교육시설	
		A-3	울산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459-4	주거지역	
		A-4	울산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1115	주거지역	
		A-5	울산 울주군 범서읍 사일길 19	주거지역	
		A-6	울산 울주군 범서읍 사연리 20-1	주거지역	
		A-7	울산 울주군 범서읍 망성리 223-3	주거지역	
		A-8	울산 울주군 범서읍 망성리 78-20	주거지역	
	악취	O-1	울산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459-4	주거지역	
		O-2	울산 울주군 범서읍 입암길 189	주거지역	
		O-3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749-9	주거지역	
	토양	S-1	울산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221-7 인근	계획지구 내	
		S-2	울산 울주군 범서읍 입암1길 49		
		S-3	울산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솔고개 동측 450m 인근		
	소음진동	N·V-1	울산 울주군 범서읍 송현길 41-7	도로변지역(주거)	
		N·V-2	울산 울주군 범서읍 울밀로 2310-3	도로변지역(주거)	
		N·V-3	울산 울주군 범서읍 사일길 68-9	도로변지역(주거)	
		N·V-4	울산 울주군 범서읍 망성2길 5-4	도로변지역(주거)	
		N·V-5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749-9	도로변지역(주거, 두동로)	
		N·V-6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856-4	도로변지역(교육시설)	
		N·V-7	울산 울주군 범서읍 진목아랫길 1-11	계획지구 내	
		N·V-8	울산 울주군 범서읍 입암1길 42	계획지구 내	
		N·V-9	울산 울주군 범서읍 두동로 163-17	계획지구 내	
	수환경보전	지표수질	W-1	울산 울주군 범서읍 사연리 703-188	대곡천(태화강 합류전)
			W-2	울산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1141-1	태화강 상류
			W-3	울산 울주군 범서읍 사연리 703-186	태화강 합류 후
			W-4	울산 울주군 범서읍 망성리 454-65	태화강 중류
W-5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1073-1	태화강 중하류	
W-6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1073-1	태화강 하류	
W-7			울산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427-10	천상천	
지하수질		GW-1	울산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신고공/생활용	
		GW-2	울산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허가공/생활용	
		GW-3	울산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신고공/농업용	

주) 측정지점 및 횡수는 사업추진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울산 선바위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서



(그림 2.25 - 1) 전략환경영향평가 현황조사 계획지점도(안)

나. 환경영향평가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환경 현황을 파악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사업지구 내 및 주변에 분포하는 주거지역, 시설물 등을 대상으로 환경질(대기질, 악취, 토양, 소음진동, 지표수질, 지하수질) 측정지점을 선정하였음.

<표 6.3 - 2> 조사지점 및 선정사유

구분	조사지점	비고	
대기질	A-1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749-9	주거지역
	A-2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855-1	교육시설
	A-3	울산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459-4	주거지역
	A-4	울산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1115	주거지역
	A-5	울산 울주군 범서읍 사일길 19	주거지역
	A-6	울산 울주군 범서읍 사연리 20-1	주거지역
	A-7	울산 울주군 범서읍 망성리 223-3	주거지역
	A-8	울산 울주군 범서읍 망성리 78-20	주거지역
악취	O-1	울산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459-4	주거지역
	O-2	울산 울주군 범서읍 입암길 189	주거지역
	O-3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749-9	주거지역
토양	S-1	울산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221-7 인근	계획지구 내
	S-2	울산 울주군 범서읍 입암1길 49	
	S-3	울산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솔고개 동측 450m 인근	
소음진동	N-V-1	울산 울주군 범서읍 송현길 41-7	도로변지역(주거)
	N-V-2	울산 울주군 범서읍 울밀로 2310-3	도로변지역(주거)
	N-V-3	울산 울주군 범서읍 사일길 68-9	도로변지역(주거)
	N-V-4	울산 울주군 범서읍 망성2길 5-4	도로변지역(주거)
	N-V-5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749-9	도로변지역(주거, 두동로)
	N-V-6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856-4	도로변지역(교육시설)
	N-V-7	울산 울주군 범서읍 진목아랫길 1-11	계획지구 내
	N-V-8	울산 울주군 범서읍 입암1길 42	계획지구 내
	N-V-9	울산 울주군 범서읍 두동로 163-17	계획지구 내
지표수질	W-1	울산 울주군 범서읍 사연리 703-188	대곡천(태화강 합류전)
	W-2	울산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1141-1	태화강 상류
	W-3	울산 울주군 범서읍 사연리 703-186	태화강 합류 후
	W-4	울산 울주군 범서읍 망성리 454-65	태화강 중류
	W-5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1073-1	태화강 중하류
	W-6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1073-1	태화강 하류
	W-7	울산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427-10	천상천
지하수질	GW-1	울산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신고공/생활용
	GW-2	울산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허가공/생활용
	GW-3	울산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신고공/농업용

주) 측정지점 및 횟수는 사업추진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2.6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1) 의견수렴계획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공람 등을 실시할 계획임.

가) 공고 및 공람

- 공람공고 : 일간신문 및 지역신문
- 공고내용 : 계획의 개요, 공람기간·장소 및 의견제출시기·방법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공고 실시사실 게시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관할 시·군·구 정보통신망 또는 개발기본계획 수립 행정기관(국토교통부) 정보통신망 : 공고·공람 내용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문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s://www.eiass.go.kr>) : 공고·공람 내용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 공람기간 : 20~40일 범위(공휴일 및 토요일은 공람기간에 미산입)
 - 공람장소 : 시·군·구청, 주민센터 등(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결정)
 - 공람장소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주민의견 제출서 등을 비치

나) 설명회 개최

- 개최시기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기간 내
- 개최장소 : 대상지역 지자체 내(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결정)
- 개최공고 : 설명회를 개최하기 7일전까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공고하거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공고시 설명회개최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공청회 개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공청회를 개최하기 14일전까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공고)

다) 설명회 또는 공청회의 생략

- 설명회나 공청회가 주민 등의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공고 등의 조치를 취할 것임

[1] 설명회를 생략한 경우

-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및 설명자료의 열람방법 등을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공고
- 해당 시·군·구 또는 개발기본계획 수립행정기관(국토교통부)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s://www.eiass.go.kr>)에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및 설명자료 등을 게시

[2] 공청회를 생략한 경우

-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의견제출 시기 및 방법, 설명자료 열람방법 등을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공고

나. 환경영향평가

1) 의견수렴계획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에 따라 공람 등을 실시할 계획임.

가) 공고 및 공람

- 공람공고 : 일간신문 및 지역신문
- 공고내용 : 사업의 개요, 공람기간·장소 및 의견제출시기·방법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공고 실시사실 게시
 - 해당 사업지역의 관할 시·군·구 정보통신망 : 공고·공람 내용 및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문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s://www.eiass.go.kr>) : 공고·공람 내용 및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 공람기간 : 20~60일 범위(공휴일 및 토요일은 공람기간에 미산입)
 - 공람장소 : 시·군·구청, 주민센터 등(추후 결정)
 - 공람장소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주민의견 제출서 등을 비치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 또는 공람이 불가피하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기관(국토교통부)의 장이 공고 및 공람 절차를 대행

나) 설명회 개최

- 개최시기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기간 내
- 개최장소 : 사업지역 지자체 내(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결정)
- 개최공고 : 설명회를 개최하기 7일전까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공고하거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공고시 설명회개최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라 공청회 개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공청회를 개최하기 14일전까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공고)

다) 설명회 또는 공청회의 생략

- 설명회나 공청회가 주민 등의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공고 등의 조치를 취할 것임

[1] 설명회를 생략한 경우

-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및 설명자료의 열람방법 등을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공고
- 해당 시·군·구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s://www.eiass.go.kr>)에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및 설명자료 등을 게시

[2] 공청회를 생략한 경우

-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의견제출 시기 및 방법, 설명자료의 열람방법 등을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공고